

환경부  
보도참고자료

--

- 
- 
- 

--	--	--	--

## “경인지방환경청”을 “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개편

- ◇ 전담 조직 설치로 수도권지역 대기질 획기적 개선 기반 마련
- ◇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개과 49명으로 '05.1.1일부터 운영
- ◇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
  - 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인력을 보강

-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(멕시코시티보다 미세먼지 1.4배, 이산화질소 1.3배 높은 수준) 수준인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치된다.
  -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▲ 지역배출허용총량제, ▲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, ▲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, ▲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,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획기적인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'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
- 이와 같이 방대한 수도권대기개선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영향권을 총량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도권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.

-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대기환경영향권이며 자동차 등 오염원의 자자체간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.
-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지역중 대기문제가 심각한 인천, 안산, 시화 등 수도권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「경인지방환경청」을 「수도권대기환경청」으로 개편하여 “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”에 의한 대기개선만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방안을 ‘04.12.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.
-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개선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.
-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(수도권기획과, 조사분석과, 지역협력과, 총량관리과, 자동차관리과)로 구성되며, 총 정원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.
- 한편, 그간 「경인지방환경청」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은 「한강유역환경청」에 다른 3대강(낙동강, 금강, 영산강)의 유역환경청과 같이 「환경관리국」을 설치하여 수행토록 하되,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.
- 한편, 경인지역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기관인 경인환경출장소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서부지역의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- 한편, 이번 조직개편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에 「대기총량과」를 설치하여, 지역대기오염배출총량 할당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,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본부의 수질보전국에 「수질총량제도과」가 설치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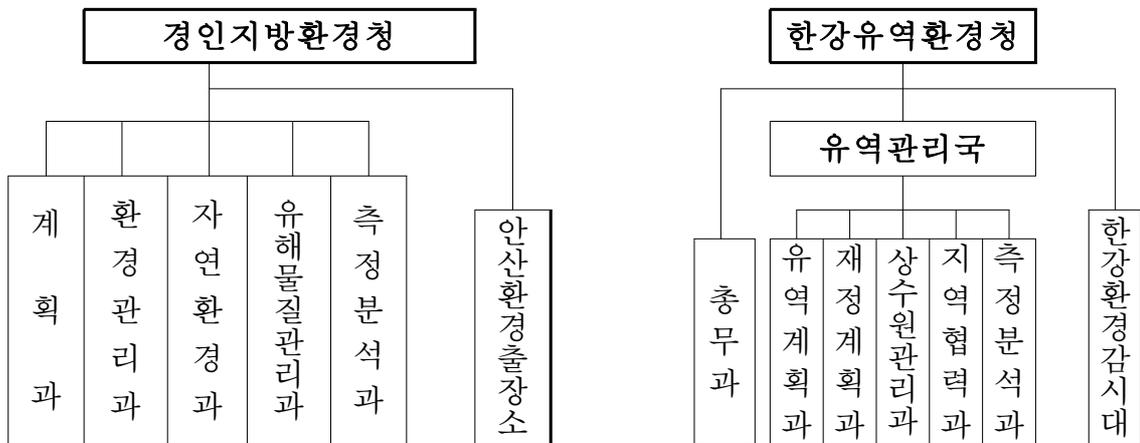
<참고자료>

- 붙임 1. 조직 개편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기능
- 2.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의 의미
- 3. 본부 및 연구원 조직 개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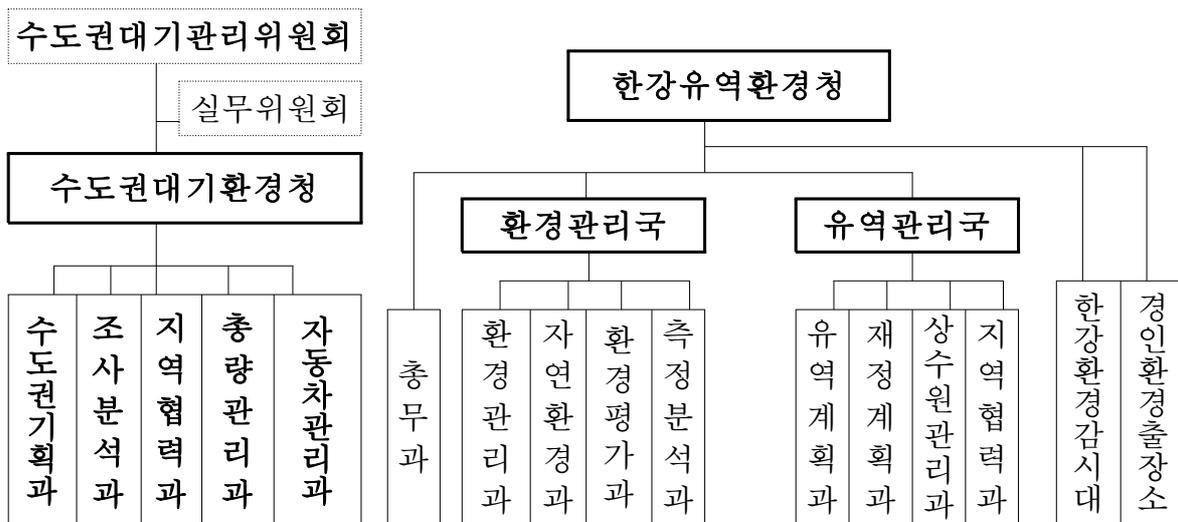
<붙임1>

“경인지방환경청”을 “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개편도

<현 행>



<개 편 후>



#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기능

-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업무(법 제8조~제9조)
  -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
  -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의 승인 및 이행현황 점검·평가
-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(법 제11조~제13조)
  -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국 기능
-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
  - 부문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및 대기개선효과 분석 등 지자체별 배출 허용총량 달성여부 평가
-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(법 제14조~제22조)
  - 500여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배출시설별, 공정별 연료 사용량, 운전조건,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정밀조사
  - 시설별, 굴뚝별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검증, 시설별·공정별 삭감잠재력 평가
  -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량 적정성 평가 및 조정
  -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
  -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
-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사후관리(법 제23조~24조)
  -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작성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그 추진실적의 평가
  -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제도 운영
  - 저공해자동차 구매자 운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

○ **운행차 저공해화 대책의 추진(법 제25조~제29조)**

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
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·저공해엔진 교체 추진 및 사후관리
-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

○ **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업무(법 제 30조)**

-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도료 공급·판매자에 대한 관리
-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

○ **환경친화적 교통관리·도시관리·에너지관리 등 정책 통합적 업무 시행**

○ **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(법 제 31조)**

-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적정관리 유도
- 소규모 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
- 무허가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**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추진(법 제 7조)**

- 대기오염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조사
- 대기오염 데이터의 종합적 해석능력 제고

## <붙임2>

#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의 의미

## □ 설치 배경

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('03.12)에 따른 신규 업무를 집행할 기구 신설 및 인력 보강 필요
  - 대형 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조정 등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 등의 신규업무 발생
  -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, 재정지원 등을 위한 신규업무 발생
  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,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 관리, 저공해엔진 개조 및 사후관리 등의 신규업무 발생
- ※ 수도권특별법은 OECD 최하위 수준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약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
-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적 대기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필요
  -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환경영향권을 구성하고 있어 지자체별 대책 추진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오염 배출원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조직 필요
- 지자체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필요
  -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및 성과 평가 필요

## 【 외국의 사례 】

-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 남부해안지역을 대상으로 “남부해안대기관리기구”(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: SCAQMD)를 설치하여 권역내 대기 관리를 총괄
  - SCAQMD는 매 3년마다 대기질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하여 대기 관리계획(Air Quality Management Plan : AQMP)를 수립·추진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
- ※ SCAQMD는 캘리포니아주의 Los Angeles County, Orange County, Riverside County, San Bernardino County 등 4개 County로 구성

## □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
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업무별 특성에 따라 5개과를 설치
  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·집행 및 지자체 시행계획의 검토·평가를 위한 수도권기획과
  - 지자체 재정지원, 민간 환경단체 협력업무, 소형 소각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과
  - 대기오염 배출량 조사, 오염도 측정 및 분석, 인체위해성 평가업무를 위한 조사분석과
  - 지역별, 사업장별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총량관리과
  -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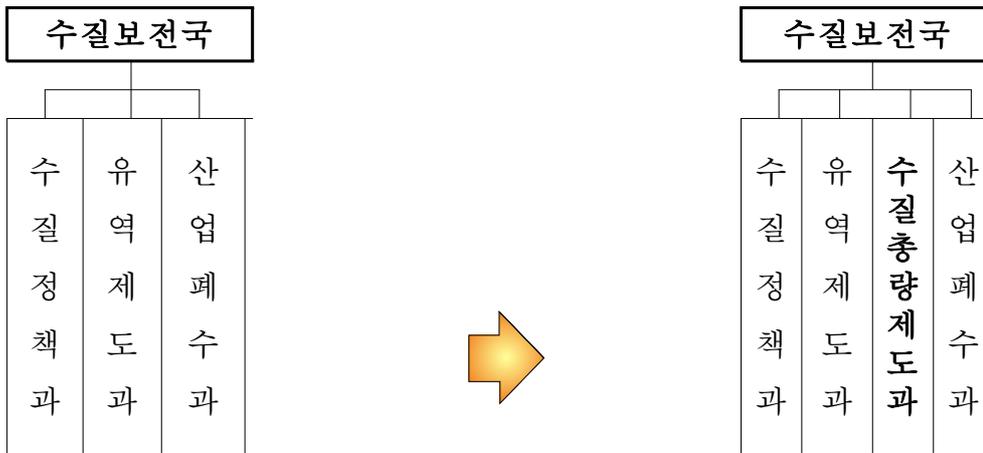
## □ 기대 효과

-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는 정부의 결연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는 것임
  -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“수도권대기환경 개선특별법”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토대 구축
- 광역적 대기환경관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대기환경 관리 가능
- 선진화된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환경 개선 전망
- ➡ '14년까지 수도권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 개선

<붙임3>

## 본부 및 연구원의 조직개편도

□ 본부 수질보전국에 수질총량제도과 설치



□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에 대기총량과 설치

